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29호)
- 이용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7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규정의 도입 배경 및 현황	6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9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7. 2.

다. 회 부 일: 2025. 7. 3.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9. 18.

다. 회 부 일: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안)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

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안)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즉,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고령동포의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후로 규정하고 있음.¹⁾ 2건의 개정안은 이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김석기의원안은 만 55세, 이용선의원안은 만 50세로 변경하려는 내용이며,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²⁾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를 “만 55세 이후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또한,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1)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2)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만 65세”를 “만 50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u>65세</u>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 ----- <u>50세</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2.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규정의 도입 배경 및 현황

(1) 복수국적 개요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³⁾

복수국적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사유로 간이귀화한 자, ② 특별한 공로나 특정 분야 우수능력으로 특별귀화한 자 또는 국적을 회복한 자, ③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④ 본인의 뜻에 반해 외국 법률 및 제도로 인해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 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⁴⁾

3)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복수국적자는 선천적·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되나, 개정안의 대상을 고려하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는 “후천적” 복수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표현함.

4)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이는 외국에서 삶의 기반을 장기간 형성한 결혼이민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으로 기존 국적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려는 것임.

(2) 복수국적 연령 기준 도입 배경

현행법 제10조제2항제4호는 복수국적 대상자 중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 즉,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연령기준을 “만 65세 이후”로 정하고 있음.

동 제도가 도입된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거주하던 동포가 노령에 고국으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간 거주국에서 받던 연금 등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배려할 필요성에 따라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복수국적은 허용하면서도, 만 65세 이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기인하고 있음.⁵⁾

(3) 복수국적자 현황

2025년 7월 기준 복수국적자는 총 193,591명이고, 이 중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80,417(41.5%)이며⁶⁾ 후천적 복수 국적자는 113,174명(58.5%)이고,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5) 제28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10.2.23.) 및 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법무부)를 참조

후천적 복수국적자 중에서 결혼이민 귀화자가 전체의 36.9%인 71,494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동포는 15.0%인 28,989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유형별 복수국적자 현황('25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선천적 복수 국적자	80,417 ⁵⁾ (41.5%)	후천적 복수 국적자 113,174명 (58.5%)	결혼이민자(귀화)	71,494(36.9%)
			65세 이상 고령동포(회복)	28,989(15.0%)
			외국국적 포기불가자	7,725(4.0%)
			국적보유신고자	1,852(1.0%)
			부칙 제2조(법률 제10275호)	1,742(0.9%)
			우수인재·특별공로(귀화, 회복)	1,100(0.6%)
			해외입양자(회복)	272(0.1%)

* 자료: 법무부

또한,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764명, 2021년 2,742명으로 지속 증가하여 2023년 4,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미국 21,520명, 캐나다 4,156명, 호주 1,117 명, 뉴질랜드 489명으로 상위 4개 국가가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국적별 65세 이상 국적회복자(복수국적자) 현황('25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7월
국적회복자		40,260	22,653	1,764	2,742	3,043	4,203	3,607	2,248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전체	28,989	14,680	1,419	1,973	2,376	3,434	3,163	1,944
	미국	21,520 (74.2%)	11,165 (76.1%)	990 (69.8%)	1,493 (75.7%)	1,782 (75.0%)	2,458 (71.6%)	2,215 (70.0%)	1,417 (72.9%)
	캐나다	4,156 (14.3%)	1,843 (12.6%)	185 (13.0%)	283 (14.3%)	342 (14.4%)	590 (17.2%)	584 (18.5%)	329 (16.9%)
	호주	1,117 (3.9%)	640 (4.4%)	39 (2.7%)	41 (2.1%)	89 (3.7%)	137 (4.0%)	115 (3.6%)	56 (2.9%)
	뉴질랜드	489 (1.7%)	144 (1.0%)	10 (0.7%)	30 (1.5%)	48 (2.0%)	108 (3.1%)	84 (2.7%)	65 (3.3%)
	기타	1,707 (5.9%)	888 (6.0%)	195 (13.7%)	126 (6.4%)	115 (4.8%)	141 (4.1%)	165 (5.2%)	77 (4.0%)

* 자료: 법무부

6) 이는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이며, 실제 복수국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복수국적자 198,524명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39세가 전체의 27.1%인 53,761명으로 가장 많고, 40~49세는 11.4 %인 22,603명, 50~59세는 2.2%인 4,362명, 60~69세는 3.1%인 6,208명, 70~79세는 8.4%인 16,749명이며, 80세 이상은 5.0%인 9,85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 복수국적자 현황('25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

연령 합계	총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총 계	198,524	23,082	33,306	28,600	53,761	22,603	4,362	6,208	16,749	9,853
비 율	100	11.6	16.8	14.4	27.1	11.4	2.2	3.1	8.4	5.0

3. 개정안의 대한 검토

(1) 연령 기준 하향 등(김석기의원안 및 이용선의원안 제10조제2항제4호)

2건의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후인 복수국적 허용 고령동포의 연령 기준을 만 55세(김석기의원안) 혹은 만 50세(이용선의원안) 이후로 하향 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충분한 기여기회를 제공하여 복수국적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적 운영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제도 도입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부여는 고령동포가 외국의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여생을 대한민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에서 출발한 제도임.⁷⁾

따라서, “고령”의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하향해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정책대상을 “65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⁹⁾ 인구의 노령화와 재정악화에 대응하고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따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추세에 비추어,¹⁰⁾¹¹⁾¹²⁾ 고령동포의 복수국적제도 도입 시 고려된 “고령” 배려 기준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하향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하향 필요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 정리해

7)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살펴본 “2.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규정의 도입 배경”을 참조

8)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미국의 경우 1983년에 해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호주의 경우 2009년에 65세에서 67세로, 독일의 경우 2007년에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였고, 일본의 경우 1999년에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연금수급권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재정이 악화에 대응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1)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제2338호, 2025.3.27.), 입법조사처

12) 「정부,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시대적 요구”」, 서울신문(2025.2.7.)

보면, 다음과 같이 찬반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음.¹³⁾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근거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국가경제에 유익한 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국제적으로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이 있음.

“반대” 근거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 등 의무를 기피하는 등 제도 악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일반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반대정서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됨.

그리고,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인하하는 것에 대한 최근 2차례의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2024년 조사에서는 65.5%였고,¹⁴⁾ 2025년 조사에서는 77.0%로 나타나고 있으므로,¹⁵⁾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¹⁶⁾

13) 찬반의견은 아래의 자료를 활용·정리함(이하 같음).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 연구: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따른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재외동포청(연구기관: 사단법인 다산경제연구원, 2024.12.)

14)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 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책연구원 2024.10.4.)

15)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표」, 법무부(2025.11.)

16) 다만, 2024년 조사에서는 이해당사자(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동포) 555명 중 50.5%가 연령하향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 다른 선행연구인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재외동포청)에서 실시한 재외동포 673명 대상 설문결과에서는, 복수국적 적정 허용연령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은 9.06%만 차지하고, 만 40세가 36.6%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 국가, 대상,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종합적이고 통일된 설문조사 실시와 통계축적을 통해 정책결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복수국적 연령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출처: 2024년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 조사(법무부)

* * 주: 조사대상 일반국민 3,000명, 이해당사자(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동포) 555명

[2025년 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전체 인원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지금처럼 만 65세로 유지해야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보다 낮춰야 한다
1,500명	1,155 (77.0)	345 (23.0)

* 출처: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표(법무부) 재구성

* * 주: 조사대상 일반국민 1,500명

[복수국적 허용 연령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복수국적 허용연령 현행유지 답변자 수	1,155명
사 유	비 윌
국내에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47.9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24.7
연령을 낮출 경우, 고령동포에 대한 인도적 배려라는 원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서	17.0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10.0
기 타	0.4
계	100.0

* 출처: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표(법무부) 재구성

* * 주: 조사대상 일반국민 1,500명 중 현행유지의견 1,155명의 응답내용

이처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여부는 해외동포의 인력 및 경제력 확보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것과, 병역, 납세, 사회복지 등 그간의 유지된 제도 전반을 함께 살피는 것과 아울러, 국적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도출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연령하향에 대한 근거 중 하나인 해외우수인재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에 대해서 이미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¹⁷⁾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동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연령제한을 둬으로써 해당 규정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2건의 개정안은 복수국적 허용 고령동포의 연령 기준을 만 55세(김석기의원안) 혹은 만 50세(이용선의의원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동포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와 아울러, 앞서 살펴본 찬반의견의 연장선에 비추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납세, 병역, 사회복지제도 부담금 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화된 연령을 탐색·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¹⁸⁾

17)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이하 생략)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18) 예를 들어, 허용연령을 하향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구로서 활동 및 사회보험 부담금 장기간

한편, 김석기의원안은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를 “만 55세 이후에”로 개정하여 복수국적 허용 고령동포의 연령 기준을 만 55세로 하향하려는 것과 동시에 “입국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재외고령동포의 국적회복취득을 입국없이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영주”는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의 허가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의 요소이므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영주 목적 심사가 원활할지 여부,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 해외에 생활기반·재산이 있는 해외동포의 소득·재산 파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여부 및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면제되는 보험료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려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임.

셋째,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¹⁹⁾과 함께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우대를 위한 연령 하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개최된 “외국인 정책위원회 거주·통합·국적실무분과위”에서 법무부는 고령자 배려를 위한 복수국적 제도 도입취지, 건강보험 재정손실 가능성, 내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부정적 여론 등을 사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재외동포청은 인구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령을 최대 하향할 필요가 있

납부를 통한 재정 기여 등의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 대한민국 거주 및 외국 국적 불행사와 같은 불이익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수할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 개정안과 관련된 부처 의견은 18p. 이하 참고자료를 참조

다는 찬성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음.

[동포 국적취득 우대방안(연령하향)에 대한 부처별 의견]

법무부	현행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한 취지(65세 고령자 배려), 건강보험 재정손실 가능성, 군복무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부정적 여론, 정책수혜 대상의 특정 국가 편중(미주 동포) 등을 고려했을 때 <u>연령 하향은 신중 검토</u>
동포청	인구 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u>기존의 복수국적 연령(65세) 최대한 하향할 필요</u>
복지부	<u>연대성 원칙(젊을 때 내고 나이들어 돌려받음)을 고려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며 재정에 기여한 바 없는 동포들이 복수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곤란</u>
병무청	병역은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u>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논의가 병역 문제로 확대된다면 국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u>
외교부	<u>병역,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u> 하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 혜택이 미국 등 4개국에 편중되어 국민의 반발 여론 예상
기재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경제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u>국내 정주가 전제되어야</u> 하고, <u>건강보험 등 정부 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u>

*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거주·통합·국적실무분과위 결과(2025.8.) 재구성

이에 따라,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 TF(가칭)”가 현재 운영 중인바, 동 TF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2)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편의제고 노력의무 신설
(김석기의원안 안 제9조제5항)

김석기의원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한 현행법 제9조²⁰⁾에

20)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제5항을 신설하고,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을 배려하여 국적회복 심사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적법」상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는 국적회복 뿐만 아니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허가, 복수국적취득, 국적이탈허가, 국적상실 결정 등으로 다양한 바, 개정안과 같이 국적회복허가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부칙 관련 사항

개정안 부칙 중 시행일과 관련하여 김석기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용선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하위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및 다부처간 통일된 실무준비 등을 위한 필요 기간을 산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김석기의원안은 개정안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국적회복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반면, 이용선의원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적용례의 필요성 및 적용 단계(신청, 접수, 심사)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

부처	주요 검토의견
법무부	<u><신중 검토></u> △ 현행법의 복수국적 허용 취지, △ 병역·납세 의무를 다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 건강보험 재정수입 감소 우려, △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 △ 정책 수혜 대상의 특정 국가 편중(미주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u>신중한 검토가 필요함</u> ○ (현행법 취지와 맞지 않음) 우리 「국적법」은 제정 시('48. 12. 20.)부터 <u>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은 국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u>하는 범위 내에서 '10. 5. 4.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됨 - 65세 이상 고령동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 취지는 이들이 <u>외국의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여생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임</u> - 최근 들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복수국적 허용연령의 하향은 <u>고령동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개정('10. 5. 4.) 취지와 맞지 않음</u> ○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 병역·납세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시기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한다면 <u>국내에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위화감이 조장될 수 있음</u> ○ (부정적 여론) 복수국적을 포함한 국적에 관한 사항은 주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국적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 '24년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u>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인 65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국민 65.5%, 동포 등 이해당사자 50.5%)인 것으로 확인됨</u> ○ (특정 국가 편중) <u>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 출신자가 고령동포 복수국적자의 94.1%를 차지*</u>하고 있는바, 일부 선진국 출신 재외동포만을 위한 복수국적이 <u>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u> ※ 제도 시행 이후 '25. 5월까지 복수국적을 취득한 65세 이상 고령동포는 28,412명으로, 그중 미국·캐나다 등 4개 국가 출신이 26,732명(94.1%)임
보건복지부	<u><신중 검토></u> ○ 개정안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회복 신청 연령을 하향 조정 시 <u>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한 모수가 증가</u>되므로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전환되는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적법 제10조, 제11조의2 - 다만,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국적동포(F-4)는 <u>내국인과 달리 소득재산을 주로 해외에 두고 있어 소득·재산의 파악에 어려움이 따름</u> - 이에 보험료 산정 시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2025년, 135,280원)를

부처	주요 검토의견
	현행 규정*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별표2 - 국내에 소득재산을 두고 있는 <u>내국인과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평균보험료(135,280원)에서 최저보험료(19,780원)로 전환되는 세대 증가로 상대적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점</u>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병무청	<u><신중 검토></u> ○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위기 상황에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더 낮추게 되면 <u>병역의무 종료 후 복수국적 취득이 더 용이해지게 되어 병역을 이행해야 할 시기에 병역을 회피하는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 사례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음</u> ○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재외국민들의 <u>자발적 병역 이행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음</u> ○ 이에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재외동포청	<u><찬성></u> ○ 그간의 동포사회의 요청 등 감안 시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필요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시 <u>▲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 ▲동포가 구축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 ▲동포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발전 기여, ▲소비·생산 등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 발생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 기대</u> ○ 40세로 하향 시 사회·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계적 하향 추진도 검토 ※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24.11, 재외동포청) - 40세 하향 시 사회적 편익·비용 비율(B/C) 최대 - 40세 하향 시 현행(65세) 유지 대비 생산유발효과(6.2조), 부가가치 유발효과(2.9조) 높음

* 자료: 법무부